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464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변론 종결2022. 5. 19.

판결 선고2022. 6. 9.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9. 25.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4,880,7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80,7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10. 8. 30.부터 2019. 9. 10.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1> B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1	부가가치세	2018년 1기	2018-06-30	2018-11-20	13,017,760	17,389,050	제2차
2	법인세	2018년	2018-09-30	2018-11-27	8,519,200	10,985,370	제2차
3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2018-12-31	2019-04-20	6,698,710	8,406,870	제2차
4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2018-12-31	2019-05-19	7,935,940	9,899,800	제2차
5	법인세	2018년	2018-12-31	2019-06-15	29,157,680	36,155,450	제2차
6	법인세	2017년	2017-12-31	2019-07-31	91,244,570	111,774,480	제2차
7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2017-12-31	2019-07-31	56,672,120	69,423,320	제2차
8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2019-03-31	2019-08-14	5,041,500	6,175,800	제2차
9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2019-06-30	2019-10-07	7,311,200	9,102,670	제2차
10	법인세	2019년	2019-09-30	2019-10-31	5,446,860	6,688,580	제2차
11	법인세	2019년	2019-09-30	2020-02-06	4,497,990	5,307,520	제2차
12	법인세	2019년	2019-12-31	2020-07-01	3,849,500	4,398,030	제2차
13	종합소득세	2017년	2017-12-31	2020-02-13	97,930,250	115,618,920	제2차
합계			337,323,280	411,325,860			

나. B는 2019. 9. 25. 남매관계에 있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이전을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 체결된 2019. 9. 25. 기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4,880,786원(= 해약환급금 28,005,660원 - 보험계약담보 대출금 23,124,874원)이었다. 라. B는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 위 해약환급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은 종신보험으로서 피고가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이후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B에게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2019. 9. 25.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을 순지급가능액 4,880,7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4,880,7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윤한

별지